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허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607”을 “1,592”로 하고, 일반직 계 “1,605”를 “1,5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89”를 “1,574”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99”를 각각 “198”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87”을 “18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허청의 정원 15명(5급 9명, 6급 4명, 8급 1명, 9급 1명)과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특허청서울사무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607</u>		<u>1,592</u>	-15	
	.		.		.		
	.		.		.		
일반직	계		<u>1,605</u>		<u>1,590</u>	-1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89</u>		<u>1,574</u>	-15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특허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99</u>	<u>198</u>	-1
일반직 계	<u>199</u>	<u>19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7</u>	<u>186</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2